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5호 2014. 10. 29.(수)

조례

○사천시 조례1106호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2
○사천시 조례1107호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3
○사천시 조례1108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28
○사천시 조례1109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9
○사천시 조례1110호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0
○사천시 조례1111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	32
○사천시 조례1112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44
○사천시 조례1113호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46
○사천시 조례1114호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	-----	47
○사천시 조례1115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	-----	55
○사천시 조례1116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	77
○사천시 조례1117호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	-----	81
○사천시 조례1118호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	89

규칙

○사천시 규칙56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	92
○사천시 규칙567호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93
○사천시 규칙568호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	95
○사천시 규칙569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97

회 람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

조 례

사천시 조례11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 이라 한다)” 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 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목욕권” 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

제4조(운영 및 관리주체) ① 시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마을에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욕탕 운영·관리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탕 소재 마을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운영·관리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7)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

[별표 1]

작은 목욕탕 명칭 및 위치 (제 3조 관련)

면 별	명 칭	위 치	비 고
용현면	작은 목욕탕	사천시 용현면 금문길 66	

[별표 2]

작은 목욕탕 이용 요금표 (제6조 · 제7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	비 고
미 취 학 아 동	3,000원	
일 반 주 민	4,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

【별지 제1호서식】

<p>NO. _____</p> <p>목 목 권 (보관용) 미취학 아동 (₩3,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p>	<p>NO. _____</p> <p>목 목 권 (교부용) 미취학 아동 (₩3,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p>
--	--

<p>NO. _____</p> <p>목 목 권 (보관용) 일반주민 (₩4,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p>	<p>NO. _____</p> <p>목 목 권 (교부용) 일반주민 (₩4,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p>
--	--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0)

【별지 제2호서식】

목 육 권 수 불 부

구분 연월일		수 입 액			이 용 액			잔 고		
		계	3,000원	4,000원	계	3,000원	4,000원	계	3,000원	4,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1)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성 별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m ²	사 용 층 수	층	
		m ²		m ²	
	주 요 시 설			m ²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규약(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자원봉사자)의 명단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2)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탁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시설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설비	사용면적	m ²	사용층수	층
		m ²		m ²
	주요시설	m ²		m ²
	기타			
직원 (자원봉사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p>「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3)

사천시 조례 제11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주소를 시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공동생활가정” (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노인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4)

3. “입주자”란 시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4. “자원봉사자”란 마을 여성회원 및 봉사활동 가능한 마을 주민들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신축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입주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3. “시설” 운영·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1부
3. 입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가정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인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된 마을은 입주희망 노인 중 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노인회장, 자원봉사회장 등 마을주민 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합리적인 시설신청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공동생활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회 분회장
2. 주민자치위원장(개발위원장)
3. 이·통장협의회장
4.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7)

5.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면장(읍·동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

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4. 노인생활가정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그 밖에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생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18)

활가정·경로당·마을회관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거주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거주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감독한다.

⑤ 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은 공동생활가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제12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명칭·입주자·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20)

[별지 제1호의1 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①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②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그 밖의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③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④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⑤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⑥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1)

[별지 제1호의2 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위원장						노인회장
간 사						이·통장
위 원						부녀회장
”						
”						
”						
”						

[별지 제1호의3 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22)

[별지 제1호의4 서식]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인	비상 연락처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3)

[별지 제1호의5 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자원봉사자 명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사도움, 청소,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서명은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할 것

2014. . .

○○○○ 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24)

[별지 제1호의6 서식]

○○ 노인공동생활가정 집기 목록표

연번	품 명	규격(종류)	구입연월	구입처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25)

[별지 제2호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변경 신고서

운영위원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의 명칭					
	입 주 자	성 명	성별	성 명	성별	
	운영위원장	성 명	성별	성 명	성별	
<p>「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사천시장 귀하</p>						
제출서류	변경사항 관련 증빙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6)

[별지 제3호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일지									
		간 사		운영위원장					
		결							
재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이용자	명		
참 여 자	성 명								
	성 별								
활동사항									
식 단	조식(명) / 석식(명) / 숙박(명)								
지출내역									
특이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27)

[별지 제4호서식]

노인공동생활가정 동향보고서

읍면동		일 시			
노인공동 생활가정명		운영위원장		연락처	
주 소		간 사		연락처	
제 목					
내 용	○ 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		FAX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8)

사천시 조례 제110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29)

사천시 조례 제110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개정후”를 “개정 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0)

사천시 조례 제111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명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를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 상금 지급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하며, “사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3항 중 “1” 을 각각 “어느 하나” 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과의 대비로서” 를 “과 비교함으로써”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1)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 “범위 내” 를 각각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소액사건심판법” 을 “「소액사건심판법」” 으로 한다.

제6조 중 “자” 를 “사람” 으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인” 을 각각 “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2)

사천시 조례 제111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법률고문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3)

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징계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
5.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4)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청렴서약)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및 상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5)

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6.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법무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정보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선임 대상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초에 공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6)

제7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 사건으로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요소송 및 경미한 소송의 요건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으로 결정한 경우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7)

제8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공무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제소를 당한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법무과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판결되면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관련 형사피소사건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 선임)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8)

5. 「사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1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사천시 소송심의회는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자문수당) ① 고문 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3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임기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0)

[별지 제1호서식]

위 축 장

변호사 ○○○
(법무법인 △△)

귀하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일부터 ○○년○○월○○까지 사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1)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사천시장을 “갑” 이라 하고, 변호사 000를 “을” 이라 하여 “갑” 과 “을 ” 간에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기타비용 등 소송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입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2)

2. 사건 확정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에 필요한 통장사본 각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입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의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사 천 시 장 (인)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을] 사천시 법률 고문변호사 ○○○ (인)

주 소 :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43)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문 사건명	자문결과		비고
	연월일	소관 부서명	담당자	자문 형식		회시 연월일	회시내용	

※ 비고란은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4)

사천시 조례 제11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9조” 를 “ 제59조” 로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를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관” 을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을 “란”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45)

제4조제8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같은 조 제2항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신” 을 “갱신” 으로 한다.

제9조 중 “제33조(별표4)” 를 “제42조(별표5)”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10조5호 중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11조 중 “각 호의 1”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용기간중” 을 “이용기간 중”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6)

사천시 조례 제11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로 한다.

제7조 중 “체결시” 를 “체결 시” 로 한다.

제10조 중 “수탁자부담금” 을 “수탁자 부담금” 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 투자목적으로” 를 “재투자 목적으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7)

사천시 조례 제11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시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8)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는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49)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면사무소는 읍·면장,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0)

제7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1)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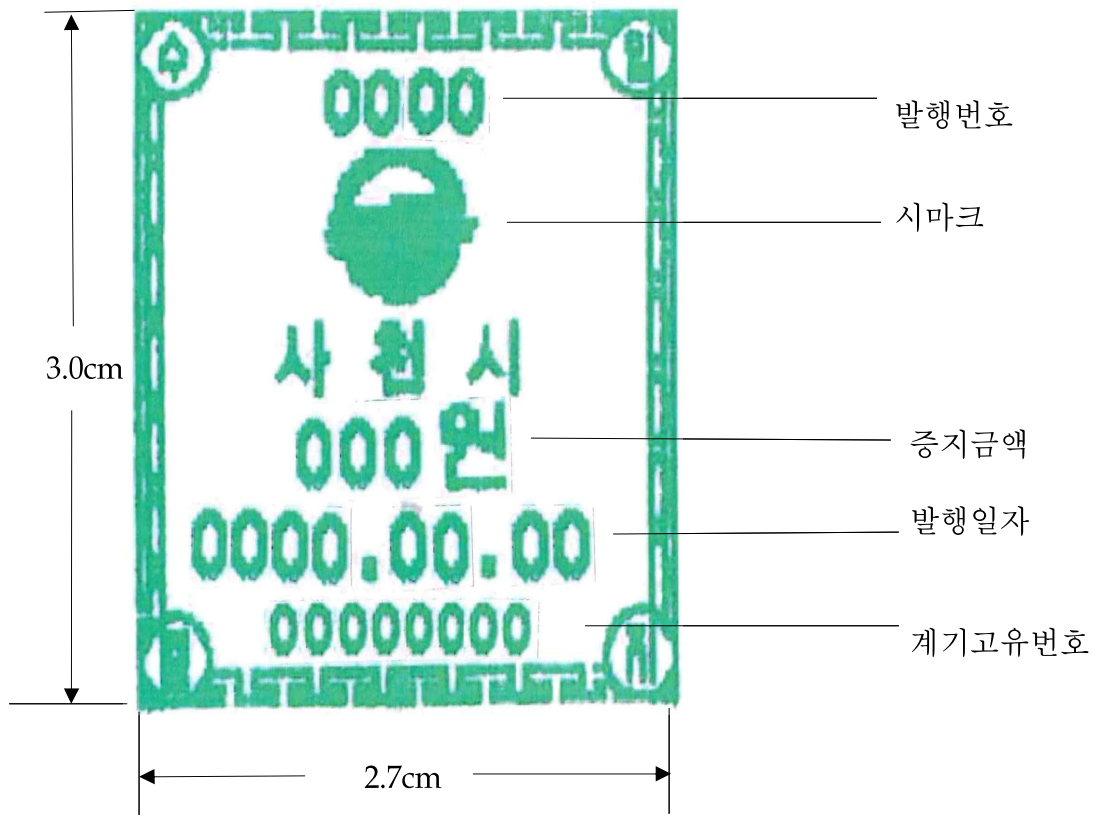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함께 폐기한다. 다만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52)

[별 표]

수입증지의 규격 및 도안



※ 인영색상 : 녹색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53)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대장

년월일	기기구분	계 기 고유번호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발 행 개시일	기타 사항	관 리 책 임		결 재		
							정	부	담당자	담당 주사	과장 (읍면동장)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54)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년월일	기기구분	전 일 까지 누계 금액 (A)	금일발행(B)		금일결손(C)		금일수입 (D=B-C)		금 일 까지 누계 금액 (E=A+D)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 주사	과장 (읍면동 장)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5)

사천시 조례 제11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 (56)

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사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7)

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4.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8)

제4조(지급 한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19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0)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3호서식)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
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62)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신 : 사천시장

참조 : 세무과장

발신 :

(인)

구 분	건수	금 액			포상금
		합 계	본 세	가산금	
합 계					
지난 연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징수촉탁수 수료증대	세입증대				

- ※ 붙임 : 1. 시·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명자료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63)

【별지 제2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담당 주사 확인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주소	성명 (성별)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를 표시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64)

【별지 제3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당 주사 확인	포상금	지급일
	직급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성별)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입증대 등을 표시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65)

【별지 제4호서식】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징수촉탁 수수료	담당 주사 확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위탁 기관	세목	징수액	채납자명 (성별)	주소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66)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연월일		. . .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 제 보 자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제 보 자	주 소					
	성 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탈세제보 내 용						
20 . . .						
제보자 (인)						
사천시장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 탈세제보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7)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평소 지방세 행정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 자료는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 제보자

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검토결과

지급 근거법령

포상금 (천원)

지급시기 확정일

3. 지급신청 관서

사천시

과

담당

- 붙 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년 월 일

사천시장

-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FAX()○○○-○○○○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8)

(뒷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요령

- 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 ② 2. '검토결과'의 '지급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기재
- ③ 2. '검토결과'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제1항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날을 기재
- ④ 3. '지급신청 관서'는 포상금을 신청할 해당 소속부서를 기재
- 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함께 발송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69)

【별지 제7호서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탈세제보 제출일자 및 관서	제 출 일 자		제 출 관 서	
포 상 금 지급신청 안내문 내용	지 급 시 기 확 정 일			
	포 상 금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p>「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장 귀하</p>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 (70)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1. 평소 지방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포상금 신청인 (권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액	원
	지급 계좌	예금주 ○○○ (○○은행 000-00-000000000)
	계좌이체일	. . . (입금자)

3. 기타사항

-

년 월 일

사천시장

※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소 / 전화()○○○-○○○○/FAX()○○○-○○○○

○○○○과 담당자 ○○ 담당 ○○ 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71)

(뒷 쪽)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작성요령

- 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서식 하단에는 탈세제보포상금업무 담당자, 담당, 과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 ② 2. '처리결과'의 '포상금지급여부'는 '포상금 지급대상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구분기재
- ③ 2. '처리결과'의 '포상금액'에는 실제로 제보자 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표기
- ④ 2. '처리결과'의 '계좌이체일'에는 실제 제보자 계좌로 포상금이 이체된 날짜를 표기하고, 입금자명(○○○시)을 함께 표기
- ⑤ 3. '기타사항'은
 -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표기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상 포상금과 금액이 달라진 경우 사유 표기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72)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피신고자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은닉 재산 신고내용					
특이사항 (보완요구사항 및 보완사항 등)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보자 (인)</p> <p>사천시장 귀하</p>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73)

【별지 제10호서식】

사 천 시

수신자

제 목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20 . . . ()에 신고한 은닉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신고자	성 명		상 호	
	주 소			
신고 내용				
처리 내용				

앞으로도 지방세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 천 시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74)

【별지 제11호서식】

채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피 제 보 자	주 소(사업장)			
	상 호		성 명 (성별)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자 료 제 출 서	
	신 고 내 용 요약			
통 지 받 은 징 수 세 액	징 수 세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용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p>「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채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장 귀하</p>				
<p>첨 부 : 통장 사본 1부.</p> <p>※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p>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77)

사천시 조례 제11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구성하되 건축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5호 단서조항 중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영제5조의6제1항” 을 “법 제4조제2항” 로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를 “전문위원회” 로 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 을 “영 제6조의2제1항” 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 (78)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의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79)

제19조제1항 본문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3호, 제6호(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제7호, 제8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9호부터 제12호, 제13호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14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1.2배” 를 “1.1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0)

6. 공개공지 한 개소의 최소면적은 당해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 및 제19조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3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1)

사천시 조례 제11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의는” 를 “뜻은” 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이하 함은” 을 “이란” 으로 하며, 제2조제2항제1호다목 중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2)

제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을 “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라목 중 “화물의 하역” 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을”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에 의한다.” 를 “과 같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3)

제7조제3항 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22호에 따른” 으로 하며,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되” 를 “따르되”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 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을” 을 “를” 로 한다.

제15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2항제1호, 제16조의2제2항제2호 제16조의2제3항 중 “1면” 을 각각 “한개면” 으로 하고,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제3호 중 “에 규정에 의한 비교표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4)

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제21조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며, “조정” 을 “보정” 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에 의거”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기산” 을 “계산” 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별표 1과 별지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85)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주 차 요 금		1일주차권	월 정기주차요금	
	기본(30분)	15분초과		주 간	야 간
소 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 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08:00 ~ 20:00까지로 한다.
- 한개 구획은 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유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5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 한다.
- 배기량 1천cc이하의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및 같은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6)

[별표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u>판매시설</u>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u>방송통신시설</u> 중 방송국, <u>장례식장<신설></u>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3. <u>제1종 근린생활시설</u>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 100㎡ 당 1대를 더한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u>업무시설</u>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 당 1대 관람장 : 정원 50인 당 1대
7. <u>그 밖의</u> 건축물	시설면적 250㎡ 당 1대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7)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두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한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88)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드는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89)

사천시 조례 제11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후 계량기”를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0)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담금의 정산) ①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과 시장이 공사 완료한 후 정산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하는 경우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4조의1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발생한 경우 시장은 요금(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을 감액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91)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금 = 미납금 \times 2/100 \times 12개월 \times 연체일수/365)을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규칙에 따라” 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9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6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9조제2항 심의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제출하여 시 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 등은 서면심의
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93)

사천시 규칙 제56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을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를 “시” 로, “사천시장” 을 “시장” 으로 하며, “기타 이에” 를 “그 밖에 이와” 로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을 각각 “란” 으로,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을 각각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6조제2항 중 “1” 을 각각 “어느 하나”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를 “에도” 로 하며,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를 “시장”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4)

제5조제1항 중 “기한내” 를 “기한 내” 로 하며, “7일전” 을 “7일 전”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전 협의” 를 “협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 소송마다” 를 “소송마다” 로,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제21조제3항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의”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내지” 를 “부터” 로 한다.

제14조 중 “에 한하여” 를 “에만”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0조제1항제6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7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95)

사천시 규칙 제56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조례”를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같은조례”를 “같은 조례”로, 같은 조 제4호 중 “최종결재”를 각각 “최종 결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입법예고전”을 “입법예고 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4일전”을 “14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중 “1”을 각각 “어느 하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6)

제8조제2항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당하는지의 여부” 를 “해당하는 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중 “의 규정에 따라”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7일이내” 를 “7일 이내”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를 “에 따라” 로, “의 규정을 준용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준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를 따른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정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을 각각 “란”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제4조, 제6조제2항 중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한다.

제4조,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6조제1항 중 “의한” 을 각각 “따른”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제17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제10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7)

사천시 규칙 제56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대리 변호사 결정) 시장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와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8)

가. 관할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인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나. 관할법원이 창원지방법원인 민사 항소심 사건

2. 외부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가. 관할법원이 창원지방법원외의 소송사건

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인 행정소송사건

다. 항소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사건

라. 상고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사건

제3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요소송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천시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 소송사건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소송사건)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65호(99)

1.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
 2.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사건으로써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3. 도로 및 하천 등 영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4.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사건
 5.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 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사건은 공무원이 직접수행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변호비용은 사천시 소송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총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사 천 시 공 보

제 365호 (100)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요소송 사건 지정에 관한 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